##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1898** 

제출연월일 : 2019. 8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하남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및 이용자 범위 등을 상위 법령에 근거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

나. 민간 위탁운영 시 '경쟁 제한적 요소를 해소'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「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」에 맞도록 정비 (안 제1조, 제2조, 제9조, 제9조의 2)
- 나.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(안 제5조제2항, 제5조제3항)
- 다. 수탁자 의무 및 위탁해지 등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, 제5조의3)
- 라. 이용자 범위 확대 개정(안 제8조의2)
- 마. 이용자납부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(안 제9조의3제3항)
- 바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조항 개정(안 제9조의4제4항)
- 사.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(안 제11조)
- 아. 경쟁 제한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 개정 (안 제13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# 7. 입법예고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9년 7월 5일 ~ 7월 15일(1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노인복지과

##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에"로, "하남시노인복지관"을 "하남시 노인복지관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하남시노인복지관"을 "하남시 노인복지관"으로, " "하남시 노인복지관"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-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

제5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2항"을 "**제3항**"으로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수탁자의 의무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를

-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·증축,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,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-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5조의3(위탁운영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1.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  -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.
- 제8조의2의 제목 "(시설이용)"을 "(이용자의 범위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한다.(단, 60세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)"를 "한다.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단, 60세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.
- 제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,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"복지회"를 "복지관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"대관료"를 각각 "사용료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때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, 「노인복지법」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수납신 고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제4항 중 "지방재정법 제29조"를 "**지방재정법 제31조**"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대관료 및 이용료의 면제)"를 "(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의 면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"부자·모자가정"을 "한 부모가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경로연금"을 "기초연금"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과오남(過誤納)한 경우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노인복지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등 관계법령을 따르며, 「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및 「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	노인장애인복지과장
	직위·성명	진일순
	팀장	노인복지관팀장
	직위·성명	조현준
	담당자	김명선
	성명·전화번호	(790-5896)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노인복지	제1조 (목적) <b>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</b>
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	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
한 하남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	하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노인복지
다.	중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
	<u>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 (위치 및 명칭) <u>하남시노인복지관</u>	제2조 (위치 및 명칭) <u>하남시 노인복지관</u>
은 하남시 서하남로 488에 두며, <u><b>"하남</b></u>	<u>"하남</u>
<u>시노인복지관"</u> 이라 칭한다.	<u>시 노인복지관"</u>
제5조 (운영관리) ① (생략)	제5조 (운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	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
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	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
으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	협약체결 등은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.	규칙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
	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
	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
	인정할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
	행규칙」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
	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
	<u>할 수 있다</u>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기간	<u>④</u> 제3항
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	
정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「공유재	
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에	
따라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	

현 행	개 정 안
한다)의 관리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	
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	
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	
수 없다.	
<u>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2 (수탁자의 의무) ① 제5조제1
	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를
	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
	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
	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
	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·증축,
	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
	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	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있
	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, 특
	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
	<u>다.</u>
	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
	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운영에
	사용하여야 한다.
<u> </u>	제5조의3(위탁운영의 해지 등) ① 시장
	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	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
	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	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
	은 경우
	<u> </u>

현 행	개 정 안
	반한 경우 3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.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
제8조의2 (시설이용) ①복지관의 이용자는 하남시 거주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.(단, 60세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) <단서 신설>	제8조의2 (이용자의 범위) ① 
<신 설>	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시설 또는 사업의 성격·규모 및 종류등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수 있으며,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운영규정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.
제9조 (사용허가) ①시장은 <u>복지회</u> 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3조제2호 및 제8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제9조 (사용허가) ① <u>복지관</u> 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 (사용료 징수) ①제9조의 규정에	제9조의2 (사용료 징수) ①
의한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	
람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<u>대관료</u> 를 납	<u>사용료</u>
부하여야 한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사용 허가, <u>대관</u>	③ <u>사용</u>
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를 수탁자가 할	昱
수 있다. <b>&lt;후단 신설&gt;</b>	이 경우 수탁자는 이용자로
	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려는 때에는
	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「노인복
	지법」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
	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	<b>4</b>
한 대관료 및 이용료를 지방재정법 제2	「 <u>지방재정</u>
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	법」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.
제10조 <b>(대관료 및 이용료의 면제)</b> ①다	제10조 (사용료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)
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	①
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저소득 <u>부자·모자가정</u> 에서 사용할	2 <u>한부모가정</u>
때	_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	2
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	,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경로연금</u> 지급대상자	2. 기초연금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1조 (사용료 반환) <u>기 <b>납부된 사용료</b></u>	제11조 (사용료 반환) <b>다음 각 호의 어느</b>
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

현 행	개 정 안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	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
료를 반환할 수 있다.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
<u>1</u> .· <u>2</u> . (생략)	<b>2. · 3</b> 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제13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	제13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
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공유재산	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회복지사업
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	법」,「노인복지법」,「공유재산 및
	물품 관리법」등 관계법령을 따르며,
	「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
	조례」 및 「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
	례」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